#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3. 1.

㈜윈피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27일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2년도 투명성보고서

## 1. 일반현황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윈피플
대표자	대표 신진영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웹하드사업자(파일보고) / 평13만명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표 신진영 / 과장 이동오

##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계획수립: 2022. 1월
    -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계획수립내용
      - · 신고·삭제요청의접수및처리계획 수립
        - (신고기능 추가 , 신고게시판 별도운영 ,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
        -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게시물 발견시 신고기능을 통해 접수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진행
        - 명칭식별및검색제한에관한사항
        - 검색금칙어, 제목금칙어 및 검색시 노출제한 알릿 표기
        - 불법촬영물등으로의심되는제목·명 칭등에대해식별및검색이되지않도록설정
        -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사항) 필터링(공공 DNA DB 또는 상용필터링, 자체필터링)을 통한 영상물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여부 판단
        - 공지사항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 의심 영상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고취

회원님들께 알리는 공지사항입니다.

몰카 및 리벤지 포르노 등 개인유출 음란물 유통금지 안내

#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아웃!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피해자도 ·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웹하드에서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한 인터넷 이용으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관련법률 ·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기술적 조치 무력화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주)윈피플,

수신자 내부결재↵

(경 유)⊬

제 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 1. 관련↔
- 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3735(2021.11.16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p2p)대상 설명회 개최알림)⊮
- 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66(2022.01.11<sub>∞</sub>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안내)↩
- 2. 위 1 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의 5 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의 5, 동법 시행령 제 30 조의 5, 6 등↓
- 나. 기재사항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검색제한 조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신고접수 및 처리 결과√
- 불법촬영물등 유통장비에 대한 내규 및 운영관련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교육 진행 사항 등↓

㈜윈피플 대표이사 신진영과



담당자 이동오

대표이사 신

참조자↵

감사자≠

시행 유해방지(2022.01)+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벽산이클래스원 2 차 1005 호 전화 : 1800-4505€



# 2022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

(주)윈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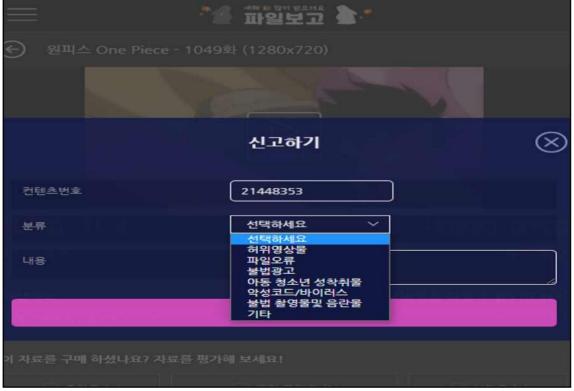
## 2) 불법촬영물등 신고기능 마련

#### ○ 신고기능 마련

- · 불법촬영물등에대한관계법령(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이시행된 2020년 12월 10일부터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 및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발견시 신고버튼을 통해서도 신고접수 가능하도록 마련되었으며 회원이 상시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게시판 별도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페이지 :https://www.filebogo.com/main/popup.php?doc=bbsInfo&idx=21397229
  - ·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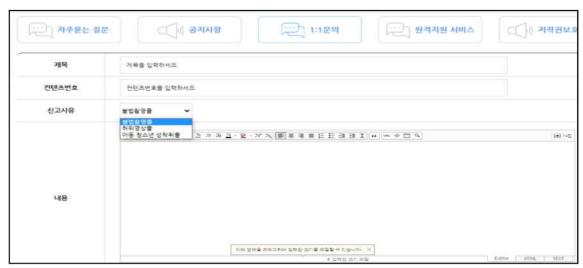


· MOBILE



#### ○ 신고처리 전담부서 운영

· ㈜윈피플 파일보고 1800-4505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의심 영상물에 대한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 하였으며, 상담이 어려운 경우 helpfilebogo@gmail.com으로 메일을통한 상시신고가능



## 3) 불법촬영물등 검색 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 검색결과 송출 제한
  - 불법유해정보차단을위한검색결과송출제한기능적용
- 불법촬영물등 연관검색어 등 제한



- 검색어 노출 제한

· PC



· MOBILE



- 4)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필터링 적용



#### 목 자

1. 성능평가 개요4
1.1 신청기관 정보4
1.2 필터링 기술 정보4
1.3 수행 경과4
2. 성능평가 목적 및 절차
2.1 목적5
2.2 절차5
3. 성능평가 기준6
3.1 평가지표6
3.2 통과기준6
4. 성능평가 환경
4.1 시험환경
4.2 평가용 데이터셋7
5. 성능평가 결과8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 전화: 031-724-0114, Fax: 031-724-0189 보고서번호: 2021-DNA-015



- 1. 의 뢰 자

  - 의 되 사 · 사전조치의무사업자 : ㈜윈피플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1005호(우동, 벽산센텀클레스원2차)
  - · 접수일자: 2021.11.04.
- 2. 보고서 용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징기반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결과 확인
- 3. 필터링 기술 적용 서비스 : 파일보고, 파일보고 모바일
- 4. 필터링 기술 개발사 : ㈜버킷스튜디오
- 5. 필터링 기술 식별정보 : MetaFilter 1.0
- 6. 성능평가 기간: 2021.11.03. ~ 2021.12.01.
- 7. 성능평가 결과 : 동과
- 8. 성능평가 내용 : 평가결과보고서 참조

작성자 승인자 직 책 : 시 형 원 성 명 : 민 경 호 작 책 : 팀 장 성 명 : 이용호 (이용·文 확 인 인사경호

2021.12.0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환화 (연화



## 1. 성능평가 개요

본 보고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평가기관")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이하 "신청기관")의 필터링 기술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수행 후 그 결과를 기술한 문서이다. 본 문서에 명시된 평가결과는 '4. 성능평가 환경'에서 확인한 결과에 국한된다.

## 1.1 신청기관 정보

신청기관명	㈜원피플	대표자	신진영		
사업자등록번호	432-81-02034	대표전화번호	1800-4505		
사업자구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필터링 기술 책용 서비스	파일보고, 파일보고 모바일				
사무실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71, 1005호(우동, 벽산센텀클레스원2차)				
신청기관 시험환경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	로 71, 1005호(위	2동, 벽산센텀클레스원2차)		

## 1.2 필터링 기술 정보

개발사	(주)버킷스튜디오		
식별정보	MetaFilter 1.0		
목이사항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의 구성요소인 '특징정보 추출 모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자체 기술 사용		

## 1.3 수행 경과

신경 서류 검토	2021.11.03. ~ 2021.12.01.
접수중 발급	2021.11.04.
준비사항 검토 및 검증	2021.11.04. ~ 2021.11.18.
시험 및 결과분석	2021.11.19. ~ 2021.12.01. (총 2회 성능평가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2021.12.02.
자문위원회 검토	2021.12.02.

## 2. 성능평가 목적 및 절차

## 2.1 목적

본 성능평가는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2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_	1171/TIA	(신청)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기관
1	신청/접수	(접수) 서류 확인 및 접수(미비한 사항 발견 시 보완 요청)	평가기관
	u.e	(서류 검토) 신청 내용 검토	평가기관
2	서류 검토/상당	(상당) 향후 일정 등 상담 진행	신청기관/ 평가기관
	준비사항	(검토)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구축, 신청기관의 시험환경 준비 현황 등 인터뷰 진행	신청기관/
③ 검토/검증	(검증) 샘플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시험환경에 대한 적정성 검증 호 평가기관과 신청기관 간에 네트워킹을 통한 원격 검증 실시	평가기관	
4	시청/결과	(시험) 협의된 세부 절차에 따라 시험 수행 호 평가기관과 신청기관 간에 네트워킹을 통한 원격 시험 실시	신청기관/ 평가기관
	분석	(결과 분석)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의 식별 로그를 분석하여 결과 계산	평가기관
(5)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기관
6	결과 검토	(결과 검토) 준비사항 검증. 시험/결과분석 단계의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회
7	위원회 검토	(위원회 검토) 성능평가 결과 최종 검토	방송통신 위원회
(8)	보고서 발행	(보고서 발행) 신청기관에 결과보고서 발행	평가기관

## 3. 성능평가 기준

## 3.1 평가지표

본 성능평가의 평가지표 및 상세 설명은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	상세 설명			
불법촬영율등 식별 가능선	계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봉동(변형봉 포함)의 특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 본신십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봉동으로 십의·의결한 절보로 인식하는 비율			
일반열 <mark>상</mark> 식별 가능성	계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 포함)의 특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권우 방송통신성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성의·의결한 정보로 인식하지 않는 비용			
일관성	불법촬영봉등 식명 가능성 및 일반영상 식명 가능성에 대한 반복 시험결과, 동일 특집정보의 식병 결과가 동일한 비율			

평가지표별 결과 계산식 및 표기법은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	결과 계산식	
불법촬영물등 식별 가능성	(불법촬영물등으로 인식한 개수 / 평가용 동영상에 포함된 불법촬영물등 개수) + 100	
일반영상 식별 가능성	(불법촬영울등으로 인식하지 않은 개수 / 평가용 동영상에 포함된 일방영상 개수) • 100	소수청 이하 1자리까지 표기
일관성	(몸의 특집점보의 식별 결과가 동일한 개수 / 평가용 데이터셋 개수) • 100	10 (AB/31) * 00 a 00 a 170a 00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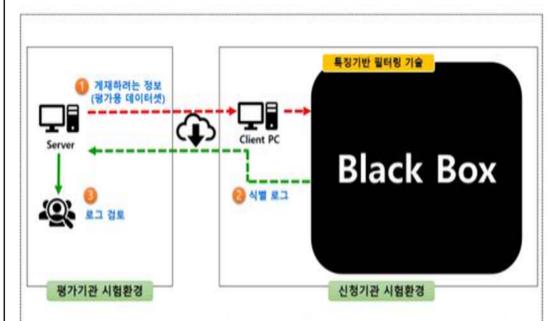
## 3.2 통과기준

평가지표	통과기준	비교
불법촬영물등 식별 가능성	95% 이십	
일반염성 식별 가능성	95% 이상	(창고1) 개별 평가지표 모두 통과 시 성능평가 통과 (창고2) 불법촬영불등이 사회에 미지는 영향 증가, 기술 성숙도 향상 등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통과기준 변경 가능
일관성	99% 01&	

## 4. 성능평가 환경

#### 4.1 시험환경

시험환경은 아래와 같이 평가기관과 신청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이때, 평가기관은 신청기관의 시험환경 구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 ① 평가기관은 Server에 평가용 데이터셋(특징정보 전자파일)을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된 방법(예: FTP, 전자메일 등)으로 신청기관에 제공
- ② 신청기관은 Client PC에 저장된 평가용 데이터셋을 순차적으로 필터링 기술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로그파일에 기록한 후 평가기관에 제공
- ③ 평가기관은 평가용 데이터셋, 불법촬영물등 특징청보 목록, 로그파일 등을 분석하여 평가지표별로 결과 계산

## 4.2 평가용 데이터셋

평가용 데이터셋은 방송통신성의위원회가 필터링 기술로 생성한 특징정보 전자파일(평가용 데이터)을 성능평가에 적합한 형태로 재분류하여 구성한다.

Ψ

## 5. 성능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불법촬영물등 식별 가능성	96.4%
일반영상 식별 가능성	99.9%
일관성	100%

- o 불법촬영물등연관검색어등제한...
- <u>불법촬영물등검색에자주사용되는단어설정여부,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u>포함) 적용여부등기재과

구분₽	PC€	Mobile∂	
연관검색어 + 노출 제한+	연관검색에 노출되지않음₽	연관검색에 노출되지않음↔	+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 제한₽	자동완성 검색어 노출되지않음↵	자동완성 검색어노출되지않음↵	4

- 4) 식별및게재제한조치↵
- 불법촬영물등에대한기술적필터링적용→
- 현재 필터링에 적용되고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투명성보고서 관련 🗸

Ü

1.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의 필터링 기술 소개₽

버킷스튜디오 메타필터는 서비스별로 작성, 입출력 인터페이스/데이터 및 질의정보(DNA)를 매칭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불법촬영물등을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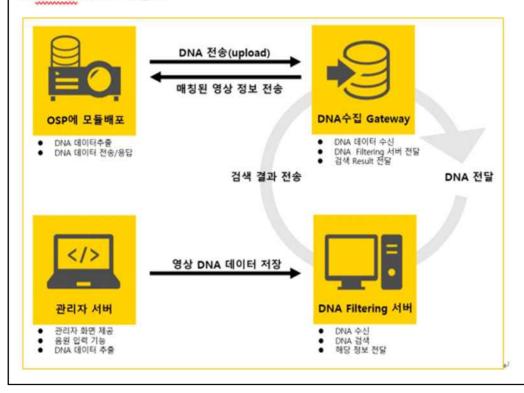
서비스 인터페이스 송수신 데이터를 중심으로 동작 방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사업자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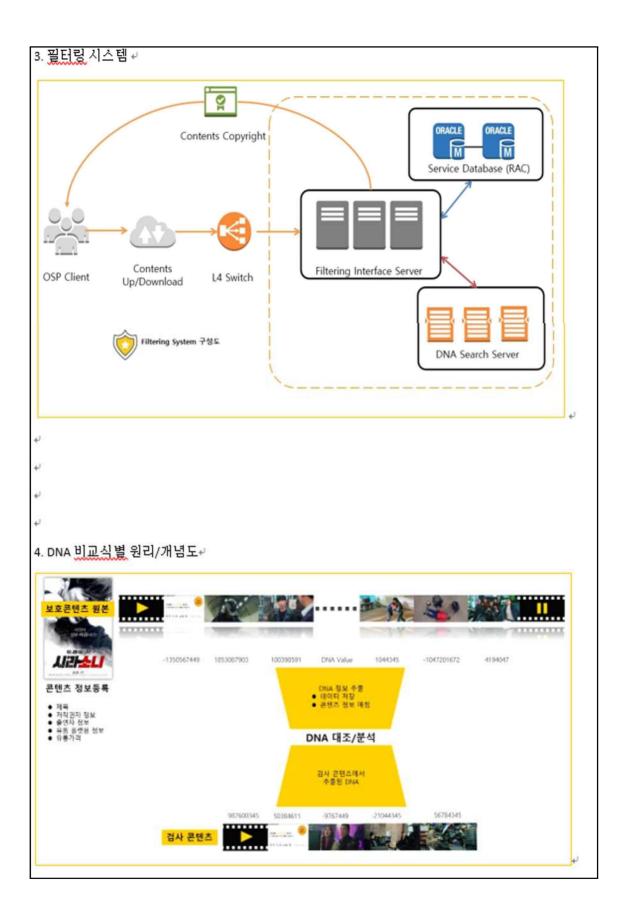
메타필터는 패키지소프트웨어+시스템구축의 형태로 사업자에 서비스 제공하며 <u>비교식별</u> 기술 및 게재 제한 기술은 통합 제품으로 구현됩니다.↩

DNA 특징점을 추출 및 비교하여 매칭정보를 통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촬영물 영상일 경우 차단 결과를 사업자에 전달(Response)합니다. ↩

4

#### 2. 필터링 서비스 구성도₽





순번	서비스명	필터링 적용	적용 기술	미적용 사유
1	버킷스튜디오	û.	상용 필터링사 Metafilter 1.0	_

## 5)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 사전경고 조치 시행
- 로그기록 보관
  - ·불법촬영물등으로의심·추정되는 영상물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으며, 로그기록이 위·변조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1년간 유지·관리하고 있음

## 6) 기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홍보.캠페인 등 자체 노력중

##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삭제요청 건수 없음
  - 불법촬영물등유통방지를위한전담부서구축및모니터링운영확대계획
    - ·컨텐츠상세페이지 신고기능 활용 , 신고게시판 별도 운행, 운영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
  - 불법촬영물등의신고접수및처리결과
    - ·2021. 1. 1. ~ 12. 31. 까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신고삭제요청 건수는 432건이며, 432건 삭제·접속차단 하였음

#### < 신고삭제요청 및 처리결과 통계 >

**※** 대상기간 : `22.1.1. ~ 12.31.(신고접수 기준)

	구분	<del>.</del>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등	_	-		_		_	_		_	_	_		_
		기관·단체		1				_			_	_	_		_
		소계	-	1		_		_	_		-	-	-	1	_
	신고사유	성적 불법촬영물	_								_	_	_		_
		성적 허위영상물	_			_		_			_	_	_		_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_		_	_		_	-		-	-	-	-	_
처리 결과	삭제·접속차단		_	_	_	_	_	_	_	_	_	-	_	_	_
	방심위 심의요청	삭제·접속차 단		-							-	_	-		_
		각하·해당없 음	_	_	_	_	_	_	_	_	_	_	_	_	_
	소계		_	_	_	_	_	_	_	_	_	_	_	_	_

##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 ·신고.삭제 요청 처리 프로세스



## ○ 신고·삭제요청 처리 프로세스



- · 신고란을 통해 신고하기시 컨텐츠 검수 후 삭제 및 제한 등록진행 후 처리결과 안내되어집니다.
- 그외 운영팀에서 24시간 전담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확인중에 있습니다.

#### ○ 기타 운영관련 사항

##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성명	성명 부서		지정일	
정	신진영	_	대표이사	2022-01-01	
부	이동오	운영팀	과장	2022-01-01	

##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수료일)	교육명	참 석 자	시 간	교육기관	
법정교육	2022-10-18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이동오	2시간	방송통신위원회	

발급번호: 2022-il-064-0001

## 교육수료증

성 명: 이동오

소 속: ㈜위피플

교육과정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

교육기간: 2022. 10. 18. ~ 2022. 10. 19.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 10. 19.

